

[별표 1]

강사수당 지급기준(제17조 관련)

구 분	기준 (수강생 수)	금액 (시간당)	비 고
일반강사	30명 미만	35,000원	수강료 수입 또는 예산지원액에서 지급
	30 ~ 39명	40,000원	
	40 ~ 49명	45,000원	
	50명 이상	50,000원	
특별강사	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급기준 준용		수강료 수입에서 지급

※ 특별강사: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
(교수, 변호사, 분야별 최고권위자 등)